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36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윤준병 · 이춘석 · 김 윤
안호영 · 박희승 · 임호선
이성윤 · 송옥주 · 임미애
전용기 · 이정문 · 박홍배
서삼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 신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물품,”을 “기부금 또는 물품,”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
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u>물품</u> , 그 밖 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③ ----- -----기부금 또는 물품,----- --.
<u><신 설></u>	제1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u>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 사 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 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 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u>